

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86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17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출요지

1. 제출이유

가.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, 수요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(SOC)인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,

나.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(치매 등)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지원, 인지능력 향상, 식사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영양보호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함.
-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성이 있어 현장 경험을 전문적으로 축적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노인요양시설(주야간보호센터 포함) 관리 및 운영
-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
-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

라. 위탁사무의 내용

- 노인요양시설(주야간보호센터 포함) 관리 및 운영
-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
-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

마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, 554번지
- 이용대상 :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, 554번지
- 시설규모 :

구 분	층별 용도	면적(단위:㎡)
지상 4 층	요양실(4인실 7개, 2인실 1개)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1인실 1개)	748.53
지상 3 층	요양실(4인실 7개, 특별실 1개)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1인실 1개)	748.53
지상 2 층	주야간보호(치매전담실) 작업/물리/운동치료실, 식당, 주방 등	797.53
지상 1 층	로비, 사무실, 원장실, 보호자 면회실 등	442.53
지하 1 층	전기, 기계실	253.82

○ 위치도



바. 민간위탁기간 : 5년(2021.4.1.~2026. 3.31.)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아. 소요예산 : 예산 책정 안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5조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(관리·운영의 위탁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제출 개요

- 제295회 금번 복지정책실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초위탁 1건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‘민간위탁 조례’)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²⁾은 시장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음.
- 본 동의안은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2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검토

가.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는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, ②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, ③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,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
- 본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참여를 요구되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.
- 2020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살펴보면,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시 실버케어센터의 경우 생활·요양·돌봄서비스 제공능력

2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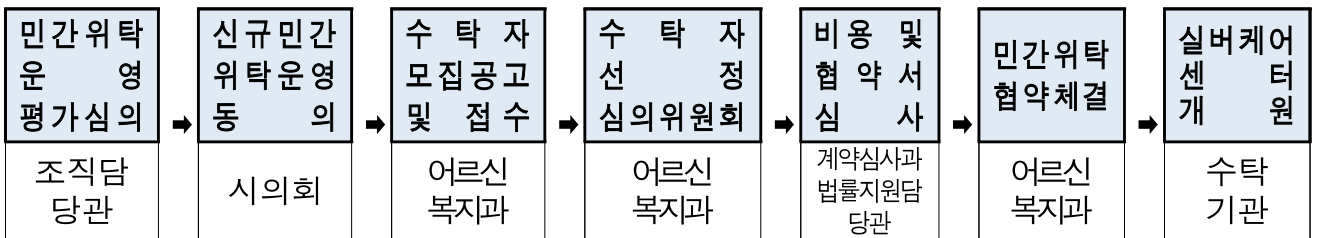
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사업 능력 배정 조정 등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.

<표> 2020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

연번	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	수탁기관	위탁기간	심의결과
1	어르신복지과	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관리 운영	시설	신규 (공모)	-	5년	적정 (권 고)

- 동대문 지역의 노인인구수는 2019년 말 기준 59,170명이고, 이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(1~2등급)은 835명이나 노인요양시설은 시립뿐만 아니라 구립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실버케어센터 설립 및 운영의 시급성이 있다 판단됨. (참고자료1 참조)

<표> 민간위탁 추진절차



3 종합의견

- 서울특별시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지역의 노인인구와 요양인원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, 치매노인 및 노인돌봄서비스는 민간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임.

참고1

시립·구립 노인요양시설 현황

(’19. 12월 기준)

구 분	노인 인구수	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(1~2등급)	장기요양시설 (요양, 공생)	정원	시립	구립	확충계획
합 계	1,478,664	22,726	516	15,809			
종 로 구	27,318	511	10	364	×	×	
중 구	22,974	389	3	83	×	○	
용 산 구	38,346	652	4	203	×	○	구립 추진중
성 동 구	43,796	619	6	418	○	×	
광 진 구	47,681	663	20	597	×	×	시립 계획중
동대문구	59,170	835	25	393	×	×	시립 추진중
중 랑 구	65,065	1,113	46	1,128	○	×	
성 북 구	70,699	1,173	21	813	×	×	
강 북 구	60,474	821	32	716	×	○	
도 봉 구	58,664	916	57	1,133	×	○	
노 원 구	80,854	1,262	32	1,069	○	○	
은 평 구	80,567	1,065	24	1,288	×	×	
서대문구	51,645	863	18	468	○	○	시립 추진중
마 포 구	52,104	752	4	302	○	×	시립 추진중
양 천 구	61,147	971	24	750	○	○	
강 서 구	83,839	1,263	30	1,102	×	×	
구 로 구	64,932	1,027	16	924	×	×	
금 천 구	37,196	495	24	661	×	○	
영등포구	56,957	810	19	450	×	○	
동 작 구	61,994	952	11	337	×	○	
관 약 구	74,787	1,047	29	606	○	×	
서 초 구	57,036	1,026	5	331	×	○	구립 추진중
강 남 구	70,896	1,297	8	311	×	○	
송 파 구	87,182	1,231	23	787	○	○	시립 추진중
강 동 구	63,341	973	25	575	○	×	시립 추진중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 1586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, 수요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(SOC)인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
- 나.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건립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, 554번지
- 시설규모 : 지하 1층, 지상 4층, 연면적 2,884 m^2
- 공사비 : 총 118억원(공사비 103억, 감리비 10억, 설계비 등 5억)
- 공사기간 : 2019. 8. 1. ~ 2021. 3. 31.(20개월)
- 개관 : 2021. 4월

나. 시설용도

○ 노인요양시설(77명), 주야간보호센터(29명)

구 분	층별 용도	면적(단위: m ²)
지상 4 층	요양실(4인실 7개, 2인실 1개)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1인실 1개)	748.53
지상 3 층	요양실(4인실 7개, 특별실 1개)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1인실 1개)	748.53
지상 2 층	주야간보호(치매전담실) 작업/물리/운동치료실, 식당, 주방 등	797.53
지상 1 층	로비, 사무실, 원장실, 보호자 면회실 등	442.53
지하 1 층	전기, 기계실	253.82

다. 주요 위탁내용

○ 위탁기간 : 5년(2021.4.1.~2026. 3.31.)

※위탁운영 개시일은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

○ 위탁사무

- 노인요양시설(주야간보호센터 포함) 관리 및 운영
-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
-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(치매 등)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지원, 인지능력 향상, 식사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함
-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성이 있어 현장 경험을 전문적으로 축적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⇒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(관리·운영의 위탁)
⇒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신명근(☎2133 -7422)